마이다스에셋자산운용 정보기술(IT)부문 공시

전자금융감독규정 제 8 조 제 3 항 및「금융 IT 보호업무 모범규준」에 따라 다음 사항에 대해 공시합니다.

1. 공시 사유

□ 전자금융감독규정 제 8 조 제 2 항에서 권고한 **정보기술부문인력비율** 미충족 및 모범규준상의 금융 ISAC 연계시기 미충족

2. 전자금융감독규정 권고 수준

정보기술부문인력비율	정보보호인력비율	정보보호예산비율
총임직원수의 5% 이상 (2.5 명)	정보기술부문인력의 5%이상 (0.13 명)	정보기술부문예산의 7%이상 (18.5 백만원)

3. 권고수준 충족 여부 및 현재 인력 및 예산 비율(공시일 현재기준)

정보기술부문인력비율	정보보호인력비율	정보보호예산비율
미충족	**미충족**	**충족**
2%(1 명)	0%(0 명)	9.86%(34 백만원)

4. 전자금융감독규정 권고수준을 충족하지 못한 사유

가. 정보기술부문 인력 비율의 미충족 사유

□ 현재 고객과의 전자금융거래가 없으며 현재의 임직원 지원에 충분하다고 판단되어 전자금융감독규정의 권고수준에 미치지 못했습니다.

5. 이용자 보호에 미치는 영향

□ 고객과의 전자금융거래를 하지 않고 있어 이용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없습니다.

6. 금융 ISAC(공동보안시스템) 연계여부

□ 미연계

□ 당사는 고객원장등등이 필요한 대고객관련업무가 전혀 없습니다.

본 공시 화면은 2014 년 5 월 15 일까지 제공하며 공시기간 종료일 이후에는 본 홈페이지의 **공시정보 게시판**에서 공시내용을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.

2014. 04. 30.

마이다스에셋자산운용 대표이사